

## 용인시 공무원 휴양시설(콘도) 이용 및 관리 규정

제정 2002. 7. 10 훈령 제140호  
개정 2005. 10. 5 훈령 제196호(법제사무 처리 규정)  
일부개정 2016. 7. 22 훈령 제398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 
일부개정 2019. 6. 14 훈령 제450호(조직개편에 따른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용인시소속 공무원의 수련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용인시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(이하 “콘도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콘도이용자) 콘도 이용 대상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(상근인력포함)으로 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콘도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주관부서는 행정과로 한다.  
<개정 2016. 7. 22, 2019. 6. 14>

제4조(이용시설) 이용대상 시설은 용인시 소유 콘도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.

제5조(이용일수) 콘도의 이용은 부서별 업무연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연간 4박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사용은 2박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순위) 콘도의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접수부에 등제된 접수순으로 한다.

1. 부서별 업무연찬(사전에 계획서 제출)
2. 포상휴가(시장의 지시에 의하되 2박 3일 이내로 한다)
3. 결혼기념일 부모회갑 등 기념일에 의한 사용

제7조(신청방법 및 사용절차) ① 콘도 이용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예약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여름성수기(7.10~8.20) : 30일 전

2. 겨울성수기(12.20~1.30) : 30일 전
3. 주말 및 휴일 : 20일 전
4. 평일 : 1주 전

② 주관 부서는 콘도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순서에 의거 콘도이용 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예약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③ 콘도 이용이 확정된 공무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소 신청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 이용으로 간주하며 사용료를 부담하고 다음 배정 시 최하위 순위에 배정한다.

⑤ 콘도이용은 콘도 이용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고 3년간 콘도 사용을 제한한다.

제8조(경비부담) 콘도 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중 기본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추가비용(인원초과, 부대시설 사용 등)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196호, 법제사무 처리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16. 7. 22 훈령 제398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용인시 공무원 휴양시설(콘도) 이용 및 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
③ 부터 ⑥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6. 14 훈령 제450호, 조직개편에 따른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콘도 이용 신청서

소 속	(전화번호 :핸드폰번호)
직 · 성명	
이용희망콘도	
이용희망지역	
이용희망일	~
이 용 인 원	
<p>위와같이 콘도이용을 희망합니다.</p> <p>20 . . . . .</p> <p>신 청 인 : (인)</p> <p><b>용 인 시 장 귀하</b></p>	
<p><input type="checkbox"/>유 의 사 항</p> <p>① 콘도이용신청일</p> <p>1. 여름성수기(7.10~8.20) : 30일 전까지</p> <p>2. 겨울성수기(12.20~1.30) : 30일 전까지</p> <p>3. 주말 및 휴일 : 20일전까지</p> <p>4. 평 일 : 1주전까지</p> <p>② 콘도 이용이 확정된 후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나 이용일정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 제출</p>	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콘도이용 취소신청서

소 속	
직 · 성 명	
이 용 예 정 콘 도	
이 용 예 정 지 역	
이 용 예 정 일	~
취 소 사 유	
<p>위와 같이 콘도이용 신청을 취소합니다.</p> <p>20 . . . . .</p> <p>신 청 인 : (인)</p> <p>용 인 시 장 귀하</p>	